[붙임]

심 사 지 침

구 분		비고
행위	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	변경

변경 적용일: 2016. 12. 30. 진료분

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

□ 변경사유

○ 「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(일반원칙)」 및 「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」 고시에 따른 급여대상의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에 대하여는 현재 심사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, 2016. 12. 30일자로 「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(일반원칙)」 고시가 개정되었음.

○ 이에, 급여기준 개정사항, 「2016년 법정감염병 진단·신고기준」 및 관련 임상진료지침 등을 참조하여 심사지침 「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」을 변경하고자 함.

□ 관련근거

○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[일반원칙]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68호, 2016.12.30.시행)

○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141호, 2014. 9. 1.시행)

○ 2016년 법정감염병 진단·신고기준(질병관리본부)

○ 관련 교과서, 학회 의견, 임상진료지침 등

□ 심사지침 세부내용

행위

제1장 기본진료료

현행		변경	
제목	내용	제목	내용
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 (2014.11.1. 진료분부터)	- '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'에서의 격리실 입원료는「진료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」에 한하여 인정함. - '격리실 입원료'와 '음압격리실 입원료' 산정에 관한 급여대상 및 격리기간에 대한 원칙적인 사항은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고시 제2014-141호, 2014.9.1. 시행)」에 의하여 적용하되,『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』은 다음과 같이 인정함. - 다만, 다음의 격리기간을 초과하여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검사 결과·의사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음	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 (2016.12.30. 진료분부터)	- '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'에서의 격리실 입원료는「진료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」에 한하여 인정함. - '격리실 입원료'와 '음압격리실 입원료' 산정에 관한 급여대상 및 격리기간에 대한 원칙적인 사항은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에 의하여 적용하되,『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』은 다음과 같이 인정함. - 다만, 다음의 격리기간을 초과하여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검사 결과·의사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음

현행		변경	
제목	내용	제목	내용
	- 다 음 -		- 다 음 -
	가) 제1군 감염병 - **콜레라, 장티푸스, 파라티푸스, 세균성이질,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** **: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대변배양검사가 음성일 때** - A형간염: 황달 발생 후 7일 (황달 증상이 없는 경우 입원 후 7일)		가) 제1군 감염병 **- 콜레라 : 설사 증상 소실되고 48시간 후까지** **- 장티푸스, 파라티푸스 : 항생제 치료 완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** **3회 대변배양검사 음성일 때** - 세균성이질,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: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대변배양검사가 음성일 때 - A형간염: 황달 발생 후 7일 (황달 증상이 없는 경우 입원 후 7일)
	나) 제2군 감염병 중 디프테리아, 백일해, 홍역, 유행성 이하선염, 풍진, 폴리오, 수두 - 디프테리아: 항생제 투여 종료 후 24시간 간격으로 2회 호흡기 분비물이나 병변분비물 배양검사가 음성일 때 - 백일해: 항생제 투여 후 5일 - 홍역: 발진 후 5일 - 유행성 이하선염: 종창 시작 후 9일 - **풍진: 발진 후 7일**		나) 제2군 감염병 중 디프테리아, 백일해, 홍역, 유행성 이하선염, 풍진, 폴리오, 수두 - 디프테리아: 항생제 투여 종료 후 24시간 간격으로 2회 호흡기 분비물이나 병변분비물 배양검사가 음성일 때 - 백일해: 항생제 투여 후 5일 - 홍역: 발진 후 5일 - 유행성 이하선염: 종창 시작 후 9일 - 풍진: **발진 후 7일** **다만, 선천성 풍진으로 입원시 만1세까지, 선천성 백내장 수술을 위해 입원시 만3세까지**

현행		변경	
제목	내용	제목	내용
	- 폴리오: 치료기간 - **수두 : 모든 수포에 가피가 앉을 때**		- 폴리오: 치료기간 - 수두 : **모든 수포에 가피가 앉을 때** **다만, 가피가 생기지 않을 경우 24시간 동안 새로운 피부 병변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, 수두 산모에게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생후 28일까지**
	다) 제3군 감염병 중 결핵, 성홍열, 탄저, 수막구균성수막염, 인플루엔자 - 결핵: 객담 도말 검사상 3회 연속(수일간격) 음성으로 나타나 전염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		다) 제3군 감염병 중 결핵, 성홍열, 탄저, 수막구균성수막염, 인플루엔자 - 결핵: 객담 도말 검사상 3회 연속(수일간격) 음성으로 나타나 전염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**다만, 10세미만 소아에서 객담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(증상, 방사선학적 이상소견, 결핵환자 접촉 등)에 따라 격리기간을 정할 수 있음.**
	- 성홍열: 항생제 투여 후 24시간 - 탄저: 치료기간 - 수막구균성수막염: 항생제 투여 후 24시간 - 인플루엔자: 증상발현 후 5일		- 성홍열: 항생제 투여 후 24시간 - 탄저: 치료기간 - 수막구균성수막염: 항생제 투여 후 24시간 - 인플루엔자: 증상발현 후 5일
	라) 의료관련 감염병 -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**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141호**)'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(일반원칙)'		라) 의료관련 감염병 -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'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(일반원칙)'에 의함

현행		변경	
제목	내용	제목	내용
	에 의함 마) 기타 감염병: 파종성 대상포진, 로타바이러스, C. difficile, 옴 - 파종성 대상포진: 치료기간 - 로타바이러스 감염증: 치료기간 - C. difficile 감염증: 치료기간 - **옴 : 치료제 도포 후 24시간** ※ 치료기간: 항생제 또는 항 바이러스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약제투여기간을 의미하며, 대증치료를 하는 경우는 증상이 지속되는 기간을 의미함.		 마) 기타 감염병: 파종성 대상포진, 로타바이러스, C. difficile, 옴 - 파종성 대상포진: 치료기간 - 로타바이러스 감염증: 치료기간 - C. difficile 감염증: 치료기간 - **옴 : 치료제 도포 후 24시간** **다만, 가피성옴의 경우 의사가 감염력이 소실되었다고 판단할 때까지** ※ 치료기간: 항생제 또는 항 바이러스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약제투여기간을 의미하며, 대증치료를 하는 경우는 증상이 지속되는 기간을 의미함.